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 제명을 ‘원전비리 방지’ 에서 ‘원전산업 투명화’ 로 변경〉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2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
3. 회부연월일 : 2025.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비리, 고장 등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전비리를 근절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현행 법률 제명은 원자력발전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전산업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명).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임 (안 제명).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원전 납품비리 및 고장 등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법률 제명에 ‘원전비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원전산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산업 종사자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본래의 입법 취지인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현행 법률 제명은 제정 당시 원전비리 근절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명되었으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 신뢰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명에 ‘비리’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원전산업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긍정적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국민 인식 차원에서도 원자력발전이 ‘비리와 직결된 산업’으로 비취질 수 있어 법률 제명이 사회적 신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됨.

개정안은 ‘투명화’라는 긍정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원자력 발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원전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대국민 홍보 측면에서도 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아울러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여 정책 집행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자력발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본래 취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 취지를 살리면서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률 제명 상 목적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로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원전산업의 건전한 기반 조성’이라는 법률 목적을 해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제310호에 종전 법률명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¹⁾

문 의 처
02)6788-5461

1) 개정안은 부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미 종전 법률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 개정된 법률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열거형 규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법기술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됨.